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분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3.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